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검 토 보 고 서

Ⅰ. 제안경위

○ 의안번호 제3218호, **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**은 2022년 5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Ⅱ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1. 제안이유

- 가. 2021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액되어 2022년 수입·지 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제11조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변경내역 : 총 1개 세부사업, 1,804백만원 증액

(단위 : 백만원)

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~	조정내역			
성색사[합 / 세구사[합 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체육진흥기금				
일반예산(재 <del>무활</del> 동)	406	2,210	1,804	
여유자금 예치	406	2,210	1,804	

#### 나. 수입·지출계획 변경내용

## 〈수입계획〉

(단위:백만원)

## 〈지출계획〉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계	11,483 13,287		1,804	
전 입 금	9,058	9,058	-	
이지수입	756	756	_	
예 치 금 회 수	1,669	3,473	1,804	

구분	당초(A)	변경(B)	증감(B-A)	
 계	11,483	13,287	1,804	
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 흥 발 전	7,115	7,115	-	
시민생활체육 진 흥	3,952	3,952	_	
행정운영경비	10	10	-	
일 반 예 산 (재무활동)	406	2,210	1,804 (443.8%)	

## Ⅲ. 검토의견

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 18억 400만원을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(18억 400만원)에 반영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18억 400만원)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산결과 발생된 잉여재원을 여유재원으로 지출계획 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관련 법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 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고.
  - 관련 기준에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 회수(수입계획) 금액이 변동되어 지출계획중 예치금(지출계획) 항목만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의 20%를 초과하는 변경에 해당되면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,
  -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**일반예산(재무활동)**을 당초 지출계획보다 444.3%, 18억 4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임

#### 〈표 3-1〉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: 백만원, %)

7	성 책 사 업 / 단 위 사 업 / 세 부 사 업	당 초	기금운용계획변경안	증 감	증 감 률
		( A )	( B )	(C=B-A)	(D=C/A)
	지 출 합 계	11,482	13,286	1,804	15.7
	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	7,114	7,114	-	-
	일 반 예 산 ( 재 무 활 동 )	406	2,210	1,804	444.3
	보 전 지 출	406	2,210	1,804	444.3
	여 유 자 금 예 치	406	2,210	1,804	444.3
	행정운영경비(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)	10	10	-	-
	시 민 생 활 체 육   진 흥	3,951	3,951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체육진흥기금 지출계획, ②체육진흥기 금 운용계획 변경안('22. 5.25) 재구성

- 아울러 동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, '21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여유자금을 예치금으로 지출하여 기존에 운용중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액 규모를 확대하려는 것으로
  - 동 기금의 관련 조례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 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예치하고, 필요시 지출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